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제도하에서는 장교·부사관에 해당하는 군간부에게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에게만 예외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전역예정인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 수행 시 범죄경력자료 처리를 제외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역예정 단기복무 군간부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확대(안 제6조제2항제3호 개정)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 외에도 전역예정 단기복무 군간부를 포함하여 전직·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나. 기능대학 학생 선발 시 범죄경력자료 정보 처리 제외(안 제52조의2 제2항 개정)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교육·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민감정보 중 범죄경력자료 처리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 . ~ .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단서 중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2제4항을”로 한다.

제52조의2제2항 중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를 “제19조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① (생략)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의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2. (생략) 3.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4. ~ 6. (생략)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략) ② 법 제39조에 따라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는 법 제40조에 따른 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군인사법시행령」 제60조의2제4항을 -----. 4. ~ 6.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제 19조제1호 -----

<u>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u> <u>제19조제1호</u>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 ----- ----- ----- -----.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270